한국정치학회 일반현황 및 정관

20170327 홈페이지 정리, 박광주

□ 일반현황

○ 설립취지

한국정치학회는 정치학 및 사회학, 행정학 등 관련 학문분야의 학술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순수학술단체이다. 본 학회는 이와 같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학술회의 및 워크샵, 출판활동에 주력해 왔으며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제반 활동을 통해 본 학회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물론 인류의 복지와 세계평화의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 주요업무

본 학회는 1953년 10월 18일 창설된 이래 2016년 현재 국내외 교수, 학자, 대학 및 연구 기관 등으로 구성된 2,200여명의 회원을 포용하는 국내 최대의 순수학술단체로 성장하였다(2016년 현재 대학과 연구소에 재직중인 1,932명 정회원, 준회원 123명, 특별회원 29명, 기관회원 39개).

본 학회는 1995년 1월, 여야 정당의 승인과 함께 국회에 사단법인체로 등록되어 그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가의 중추기관인 만큼학회의 독자성 확보는 물론 대외활동을 하는데 보다 큰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 연혁

- 본 학회는 1959년에 『한국정치학회보』를 창간하여 현재 연 6회(국문 4회, 영문 2회)를 발가하고 있으며.
- 또한 한국정치학회소식지를 1969년 발간한 이래 현재 년 4회 이상 발간하고 있다.
- 이외에도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연구단행본 발간 등을 통하여 정치학 및 관련 학문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 최근 들어 학술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학 분야별 학회나 연구회 등을 연구협력단체로 연계하여 이러한 단체들이 학회 학술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있으며,
- 미국·일본·중국·러시아·태국 등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어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 ①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83-11(동교동 201-42)에 둔다.
- ②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와 활동은 본 회칙에 준하고 본부와 밀접한 연락을 갖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정치학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 조사, 발표 및 보급을 도모하고, 한국의 정치 및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며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진행한다.

- ① 정치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 ② 한국의 정치 및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 ③ 회지 및 서적의 발간
- ④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 ⑤ 본 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들과의 교류
- ⑥ 본 회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
- ⑦ 기타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3항 중 1개항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① 정규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정치학이나 인접분야에 종사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 ② 정치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③ 정치학 또는 인접분야의 연구기관에 근무하며 제①항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연구원

제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학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 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추대한다.

제8조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부합하며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단체로 한다.

제9조 (준회원) 준회원은 대학의 조교, 대학원 졸업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및 자격 상실)

-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연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미납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 회원자격이 회복되다.
- ②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11조 (기구 및 임원의 구분)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명
- ② 차기회장 1명
- ③ 부회장 약간명
- ④ 지회장 약간명
- ⑤ 상임이사 20명 내외
- ⑥ 이사 정회원 총 수의 1할 이내
- ⑦ 감사 2명
- ⑧ 고문 및 명예이사 약간명

제12조 (임원의 자격, 선출방법, 임기)

-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하며, 다음 차기회장과 감사는 회원들이 선출한다.
- ③ 차기회장은 본 회칙 제4장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 ④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⑤ 부회장과 상임이사 및 명예이사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⑥ 회장은 전임회장을 본 학회의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회가 선임하는 부회장 중 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 ③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편집, 섭외 등 담당이사를 각각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각 담당 상임이사는 해당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각 위원회에 약간명의위원을 지명한다.
- ④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명예이사는 원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⑤ 감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다.
- ⑥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4조 (특별위원회)

- ① 본 회는 특별위원회로서 회관건립위원회, 학술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교육·충원위원회 등을 두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약간 명의 위원을 지명한다.
- ③ 학술상위원회는 한국정치학회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5조 (연구분과위원회) 본 회는 연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로 연구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연구분과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분과위원장과 간사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사무국 직원) 본 회는 사무국장, 간사 및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하다.

제4장 차기 회장 선거관리

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본 회는 차기 회장선거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명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 은 전임회장 중 1명을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총무이사가 겸임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약간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후보 등록)

- ① 차기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매년 10월 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단 보궐 선거시에는 선거일 20일저까지 등록해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회장 추천서를 접수하는 즉시 추천된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다.

제19조 (선거인 명부 작성 및 공지)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10월 31일 현재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선거홍보물의 양식과 배포방법, 그리고 선거 운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제20조 (선거권자 및 선거 방법)

- ① 선거권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특별회원이 갖는다. 다만, 신입회원은 가입년도 다음 해의 선거에서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차기회장은 총회에서의 직접투표와 우편투표(부재자투표) 방식으로 선출되며, 유효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③ 차기회장의 투표결과는 총회에서 개표하고 발표한다.

제5장 회 의

제21조 (각종 회의)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총회는 회비 납부자 5분의 1이상의 참석 및 위임으로 성립한다.
-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주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 ④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명예이사이사로 구성하고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총회의 권한)

- ① 총회는 상임이사회가 제시하는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중대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②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3조 본 회의 출자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및 입회비
- 2. 출연금품
- 3. 찬조금
- 4. 기부금
- 5. 보조금
- 6. 기타 수입 및 자산
- 7. 출연금품, 찬조금, 기부금 및 보조금의 접수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 8.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4조 본 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 1. 별지 및 목록 기재의 재산
- 2. 회비 및 입회비
- 3. 자산에서 나오는 과실
- 4. 사업에 따른 수입
- 5. 기타 수입

제25조(자산의 구성)

①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성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취득, 처분,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1.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 3. 이사회에서 기존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 본 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27조 본 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회장은 회관관리를 회관관리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30조 본 회의 예산작성 및 집행권은 회장이 갖는다.

제31조 본 회의 매년 세입세출예산은 제33조에 의해 회계연도 개시 직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의 확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32조 (결산 보고) 본 회의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안에 연말 현재의 재산 목록과 함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의 검토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회계 관리)

- ① 본 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전일까지로 한다.

제7장 정관의 개정과 해산

제35조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36조 본 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단,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

체에 출연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규정한다.

제2조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총회 결의를 서면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3조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발효된다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0399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83-11 한국정치학회빌딩 4층

TEL: (02)3452-9555, 4920 | FAX: (02)3452-9557 | E-mail: kpsa@kpsa.or.kr

학회비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2